

2020년도 제23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20. 2. 26.(수), 15:00 ~ 18:0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7명
 - 심의위원 : 박성호 위원장, 김경숙 위원, 박재화 위원, 박정인 위원, 윤종수 위원, 최승수 위원, 최현용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위원장
 2. 전차(제2020-6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심의위원
 3. 안건상정 위원장
-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 제3호 : 2020년도 상반기 분과위원회 구성
4. 폐회선언 위원장

록 권고함.

- 우리말 자막파일은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과 보완재 관계에 있고 영상과 결합한 후 합법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게 되는 점, 복제·전송자가 직접 우리말로 번역하였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시정권고를 가결함.
- 음악저작물 저작권자와 실연자 등 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 전송권 등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 제2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 주요내용

- 청구인이 '☆☆☆☆☆ ☆☆☆☆'에 대하여 1건의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 명령을 청구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을 공유하고, '☆☆☆☆☆ ☆☆☆☆☆'가 저작권법 제2조 제30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제3분과위원회(2020. 2. 20. 개최, 제2020-8회)가 전체심의위원회에 부의한 1개 안건 심의

- 회의결과

- 청구인은 일본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비배타적(non-exclusive) 이용 허락을 받은 자로서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청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결함.

○ 제3호 : 2020년도 상반기 분과위원회 구성

- 주요내용

- 불법복제물등에 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2020년 상반기
분과위원회를 재구성

- 회의결과

- 만장일치로 2020년도 상반기 분과위원회 구성(안)에서 제2분과위원
회와 제3분과위원회 회의시작 시각을 10시에서 10시 30분으로 변
경하여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박성호 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23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6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박성호 위원장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발언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차회의록 10쪽, 22쪽, 27쪽, 28쪽, 31쪽 자구 수정의견을 주셨음.
29쪽에 principle로 기재되어 있는데 철자를 principal로 수정하겠음.
저작권법 103조의 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의 경우에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결을 거쳐 회의록을 비공개하고 있음.
- B 위원 : 전차회의록에 비실명 처리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 특별히 비식별 처리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함.
- 참석 위원 전원 : 이의 없음.
- 박성호 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의결안건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안건목록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을 제시하면서)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4에 따라 위원님들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 제척 사유 해당 사항이 없음.
- 박성호 위원장 :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요약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은 안건번호 제2020-5888호~5959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159건임.
안건번호 제2020-5888호는 티스토리 이용자가 휴대용 콘솔게임기인 '▲▲▲▲ ▲▲▲(▲▲▲▲▲▲▲▲ ▲▲▲▲▲)'에 이른바 '커스텀 펌웨어(custom firmware)'를 설치하는 방법과 설치파일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를 제공한 사안임. '커스텀 펌웨어'가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또는 복제·전송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전체위원회에 부의함.
안건번호 제2020-5889호~5891호는 티스토리 이용자가 일본 애니메이션의 우리말 자막파일을 블로그에 게시한 사안임. 공정이용 등 저작권 재산권 제한사유 해당 여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전체위원회에 부의함.

복제, 전송, 이용 등의 행위, 즉 저작권의 침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필요는 없음.

누구든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 외에는 제한적인 용도만 있는 프로그램을 “전송”하여서는 아니 됨.

영국 고등법원도 2019. 9. ○○○○ 스위치에 커스텀 펌웨어를 설치하는 방법을 통해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함으로써 ○○○○사에게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박성호 위원장 : 3분과위원회에서 ■■■■ ■■■■ 커스텀 펌웨어를 전체위원회에 회부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해주기 바람.
- A 위원 : 3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기술적으로 중립적인 부분과 공정이용에 해당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으로 나뉘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어 전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성원영 전문위원 : (제2020-15회 제3분과위원회 회의록을 제시함)
- A 위원 : 회의 당시 주안점을 두고 논의했던 것은 커스텀 펌웨어가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중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고시에 해당되는지 여부였고 예외 고시의 해당여부에 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음.

- B 위원 : 3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할 때 전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포함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었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 3분과위원회 검토보고서에는 예외 고시 해당 여부 의견을 기재하였는데 전체위원회 검토보고서에는 전문위원의 의견 없이 예외 고시 내용만 검토보고서에 기재하였음.
- C 위원 : 커스텀 펌웨어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저작권과 관련 없는 부분도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인 커스텀 펌웨어가 어떤 기능이 있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민원인이 보호원에 신고하면 보호원이 조사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사무처에 조사한 자료를 제출하는데 현실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조사해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사무처에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움. 게임기에서 인터넷 접속이 안 되는 것인데 PC처럼 인터넷 접속이 되도록 했거나, 저작권 침해와는 무관하지만 차단해놓은 기능을 커스텀 펌웨어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했는지를 조사하는 데 현재 보호원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음.
 통상적으로 ◆◆◆ ◆◆◆에 커스텀 펌웨어를 하는 것은 불법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서도 주된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C 위원 : 주된 목적이 불법복제물을 이용하기 위한 것인지도 불분명함.

기기를 여러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커스텀 펌웨어를 하는 것이며, 권리자가 권리주장도 하지 않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선불리 주된 목적이 불법복제물 이용이라고 판단하여 시정권고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신중하지 않다고 생각함.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정권고를 해야 하는지 의문임.

- A 위원 : 위원님 발언하신 일부 내용에 대해 동의함.

유럽 사법 재판소 영국 판결은 ○○○사에서 권리주장자로서 청구하여 받은 판결임.

과거 '마지콘' 프로그램이 유통될 때 ◆◆◆에서 소송해서 유사한 판결을 받았음.

권리자인 ◆◆◆가 신고했다면 영국 사법 재판소 판결이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 쉬웠을 것인데, 심의대상 안건은 일반인이 신고한 것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함.

- B 위원 : 1기 심의위원회에서 펌웨어가 심의대상으로 상정된 적이 있었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 1기 심의위원회에서 콘솔게임 프로그램을 개작한 사안을 다룬 적은 있으나 펌웨어는 이번 건이 처음임.

- B 위원 : 논의대상이 되는 펌웨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

기술적 보호조치를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라는 우려의 말씀이 있었는데 시정권고 심의에서 불분명한 정보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 본 건 커스텀 펌웨어를 설치한 후 정품 펌웨어와 비교를 하여야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심의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음.
- A 위원 : 국내에서 펌웨어를 권리자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여 소송된 건이 있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 현재 알고 있는 판결문은 없음.
- A 위원 : 본 사안에 대해 권리자가 주장했다면 80% ~ 90% 저작권 침해로 볼 여지가 농후한데 일반인이 신고했기 때문에 권리자 입장이 어떤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호원이 행정적으로 결정해주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 C 위원 :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영업상의 이익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음.
게임에서 치트를 사용하는 것은 능력을 조작하는 것인데 치트는 저작권 문제와는 관련 없고 게임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방해하기 위한 것임.
권리자가 저작권 문제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인지 구분해서 보아야 함.
저작권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일 가능성이 있음.
- D 위원 : ◆◆◆ 펌웨어는 블로그 운영자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패키징되어 해외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것이고 블로그 운영자는 패키징된 펌웨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 ◆◆◆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만 제시함.

불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펌웨어는 게시물에 포함된 것이 아니며, 펌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할 수 있지만 펌웨어가 블로그 운영자의 것이 아님.

- E 위원 : 펌웨어가 불법 정보라고 한다면 불법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정보로 볼 수 있음.
- B 위원 : 펌웨어 자체가 어떤 성격인지 먼저 전체되어야 할 것임.
- D 위원 : 펌웨어 자체를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없음
- B 위원 : 이번 심의에서는 펌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링크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침해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로 볼 수 있음.
블로그 운영자가 직접 펌웨어를 제작하지 않았지만 저작권법에서 불법복제물등 정보도 시정권고 심의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있음.
- A 위원 : ◆◆◆ 콘솔게임 같은 경우에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삽입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펌웨어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받은 불법 소프트웨어도 기기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줌.
- D 위원 : 행정조치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불법 영

상물을 볼 수 있는 동영상 재생 플레이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해당 동영상 재생 플레이어가 불법인지?

불법 다운로드 받아서 감상하면 불법이지만 동영상 재생 플레이어 자체는 불법이 아님.

- A 위원 : ◆◆◆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기술적 보호조치 하여 기기를 판매했는데 기술적 보호조치를 펌웨어나 '마지콘' 프로그램으로 우회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와는 다름.

- 박성호 위원장 : 의견을 정리해보면, D 위원님은 펌웨어 자체를 폭 넓게 보는 것이고 A 위원님은 펌웨어를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기 위한 것으로 연결시켜서 논의를 제기한 것이고 C 위원님은 펌웨어 자체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기능도 있을 수 있지만 저작권 침해와 별개로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논의 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

A 위원님 말씀처럼 커스텀 펌웨어가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것이 명확하다면 심의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

- A 위원 :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를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중요함.

기술 자체는 중립적이기 때문에 커스텀 펌웨어, 마지콘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가 문제임.

○○○ 소프트웨어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부분과 연결하여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의견임.

- 박성호 위원장 : A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함.
논의대상이 되는 커스텀 펌웨어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에 해당되는지, 명확하게 소명되었는지에 대한 것인데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은 어떤지?

- 성원영 전문위원 : 행정조치를 위한 심의이기 때문에 법원 재판처럼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음.
통상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 커스텀 펌웨어를 하는 이유는 불법복제한 게임프로그램 이용하기 위한 것임.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 게임기에 커스텀 펌웨어를 설치하는 이유는 저작권과 무관한 기능 확장보다 불법복제 프로그램 이용 때문이라고 보아야 함.
법원의 재판이 아닌 행정형 시정권고 제도를 둔 취지는 권리자가 직접 요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적인 요소를 발휘해서 행정기관이 신속하고 조기에 개입해서 불법복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함. 검토보고 내용 정도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함.

- F 위원 : ◆◆◆ ◆◆◆에 게임프로그램이 포함된 SD카드를 삽입하면 게임이 구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를 구동하기 위한 펌웨어를 커스터마이징한 것으로 두 가지 의문이 있음. 첫 번째는 정품 소프트웨어 SD카드를 삽입해야 실행하는 것인지, 두 번째는 패치되었거나 크래킹된 게임 소프트웨어를 SD카드에 삽입해야 실행되는지
개인적으로 후자라고 생각함. 만약 후자라면 커스텀 펌웨어를 설치했지만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커스텀 펌웨어만 설치해서

는 ◆◆◆ ◆◆◆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복제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함.

- A 위원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판례가 소개되어 있듯이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는 침해행위를 수반되지 않아도 됨.

- F 위원 : 커스텀 펌웨어를 하면 6가지 정도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옴.

이용 가능한 기능은 리눅스 설치, 치트 사용, 롬 파일 적용, 한글패치, 치트 사용을 위한 홈브류 구동, 에뮬레이터 구동이며, 리눅스 설치는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리눅스 설치를 위한 커스텀 펌웨어 제공 자체를 불법으로 볼 것인지, 심의위원회에서 시정권고를 가결해야할지 의문이며, 시정권고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함.

- D 위원 :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가 전용 게임기일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 아닌지?

- F 위원 : ◆◆◆ ◆◆◆가 ◆◆◆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OS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freeBSD기반으로 커스터마이징된 것임.

freeBSD 소스가 공개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 ◆◆◆ 펌웨어에 대한 접근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커스텀 펌웨어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정보를 제공하는 것까지 불법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는 한계성이 있다고 생각함.

- A 위원 : 관리자가 봤을 때 정보를 제공해서 게임이 불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직접 신고한다면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인이 신고한 부분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기 어려움.

- D 위원 : freeBSD나 오픈소스형태로 개발된 것이라면 ©©©가 저작권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픈해야함.

- F 위원 : freeBSD는 소스 오픈을 강제하지는 않음.

- 성원영 전문위원 : 소스를 오픈하는 것과 TPMs는 별개로 봐야할 것임.

- F 위원 :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건이 형성되었다는 것임.

- 박성호 위원장 : 커스텀 펌웨어가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와 관련 있다는 것이 검토보고 내용으로 소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시정권고 성격상 관리자가 권리보호를 위해 신고한 것이 아니고 내부 모니터링하거나 일반인이 문제제기 하는 것인데, 그런 성격을 고려했을 때, 검토보고 내용만으로는 커스텀 펌웨어가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에 연관이 되는 것으로 소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위원님들이 판단해야 함.

의견표명이 끝났다면 의결해서 결정하면 될 것임.

- E 위원 : 검토보고 내용만으로 설득이 안 됨. 설득이 안 된 이유가 기술적 이해가 부족해서인지, 검토보고서의 내용이 설득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음.

영국 법원에서의 사례에 대한 검토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판결이고 ◆◆◆ ◆◆◆에 커스텀 펌웨어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에 해당하는 이유로 명령한 것으로
생각됨.

심의대상 게시물과는 사실 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검토보고서의 영국 판례는 커스텀 펌웨어를 전송
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블록킹을 인용한 가처분 사건임.

영국 판결이 이번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
시면, 우리나라 대법원의 플레이스테이션2 판결을 참고해 주시기 바
람.

- C 위원 : 플레이스테이션2 사건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명확했
는데 ◆◆◆ ◆◆◆ 커스텀 펌웨어는 다수의 사람들이 불법복제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해서 기능에 대한 소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소명이 되려면 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입증되어야함.

◆◆◆ ◆◆◆ 커스텀 펌웨어를 소개하는 곳에서는 커스텀 펌웨어를
유료로 판매하거나 무료로 배포함.

펌웨어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블로그 운영자가 게시물에 불법 자
료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기재한 것으로 유추해보면 불법보다는 다른
쪽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구했을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상황에서 심의위원회가 커스텀 펌웨어는 불법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심의대상 게시물도 불법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
기 어려움.

시정권고는 공권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소
명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 F 위원 : 안드로이드 펌웨어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글도 커스텀 펌웨어와 동일한 이유로 신고가 들어오면 시정권고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 D 위원 : 예를 들어 윈도를 사용하는 컴퓨터에 리눅스 펌웨어를 설치하면 리눅스에 포함된 에뮬레이터가 있는데 에뮬레이터를 통해 불법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할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펌웨어로 리눅스를 설치하면 불법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임.
- 박성호 위원장 : 예외적으로 과거에 심의조치 대상이 되는 당사자에게 확인을 해본 적이 있는데 커스텀 펌웨어와 관련해서 블로그 운영자에게 확인했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 과거에 관리자 또는 복제·전송자에게 보호원 직원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의사를 확인하거나 의도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음.
- E 위원 : 관리자가 커스텀 펌웨어에 대해 분석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한 것이 맞다고 설명해주면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데 관리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선제적으로 시정권고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함.
이번 사안과 비슷한 사안이 있었는데 관리자가 권리주장을 하지 않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시정권고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
다른 나라에서 소송을 제기한 선례가 있고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에서 비즈니스적으로 손해를 보는 관행이 이뤄지고 있

의대상 게시물의 형태에 따라 공정이용으로 보거나 저작권 침해로 봄. 본 안건도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공정이용으로 봐야 할지, 저작권 침해로 봐야 할지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다른 심의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전체위원회에 회부함.

- 박성호 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E 위원 : 과거 심의위원회에서는 외국 영상저작물의 우리말 자막파일의 경우 번역저작물로서 저작물성이 인정되면 시정권고 내리는 데 소극적이었고, 원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제작한 자막파일을 무단 복제하여 전송할 경우 시정권고를 가결함.
- A 위원 : 본 안건은 게시자가 우리말로 번역하여 자막파일을 블로그에 게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 있는 자막파일을 다운받아 블로그에 게시한 것으로 보여 번역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 E 위원 : 자막파일의 형태가 smi 또는 srt의 경우는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는데, 본 안건에 대해서도 시정권고의 대상이 된다고 봄.
- F 위원 : 자막파일이 제공되지 않고, 블로그 본문에 우리말로 번역된 대사 텍스트만 올라올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 B 위원 : 동영상과 연동될 수 있는 기능이 부가되어 있지 않으면 시

정권고에 소극적인 입장임.

- 성원영 전문위원 : 외국 영상저작물의 대본이나 대사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싱크 없이 게시한 심의 사례는 없음. 다만, 드라마 작가 지망생이 우리나라 드라마 대본을 작가 지망생 커뮤니티에 파일로 제공한 사안은 있음.
- 박성호 위원장 : 전문위원 검토 의견대로 시정권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위원님께서서는 이의제기하여 주시기 바람.
- C 위원 : 이의 없음.
- G 위원 : 이의 없음.
- F 위원 : 동의함.
- A 위원 : 이의 없음.
- D 위원 :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동의함.
- E 위원 : 가결하는데 동의함.
- B 위원 : 가결 의견임.
- 박성호 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5889호~589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5892호~5959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네이버 이용자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일본 애니메이션 ‘○○○○ ○○’의 OST 음원을 제공한 사안임.

(제2020-5892호~5959호 조사자료를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는 음원은 모두 ‘아마존 재팬’ 사이트에서 판매 중임. 순번 5번부터 27번은 극장판 ‘○○○○ ○○’의 엔딩 곡 음원 전체 분량과 클로징 크레딧(closing credit)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면서 가사를 함께 게시함. (순번 5번 URL에 직접 접속하면서)안건번호 제2020-5892호 심의대상 게시물 주소를 입력하여 직접 보겠음. 게시된 영상 재생 바람. 가사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음원과 함께 제공함. 가사를 누가 번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음. (순번 6번 URL에 직접 접속하면서)안건번호 제2020-5893호 심의대상 게시물 주소를 입력하여 직접 보겠음. 게시된 영상 재생 바람. 동일한 블로그에서 다수의 음원과 영상을 제공하고 있음. (순번 29번 URL에 직접 접속하면서)안건번호 제2020-5916호 심의대상 게시물 주소를 입력하여 직접 보겠음. 해당 심의대상 게시물도 같은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음. 앞서서 보신 안건번호 제2020-5892호~5914호 심의대상 게시물의 경우 mp3 파일이 게시되어 있지 않지만, 안건번호 제2020-5915호~5958호 심의대상 게시물은 mp3 파일이 제공되어 있음. 현재 mp3 파일은 다운로드 되지 않음. (순번 72번 URL에 직접 접속하면서)안건번호 제2020-5959호 심의대상 게시물 주소를 입력하여 직접 보겠음. 게시된 영상 재생 바람. 심의대상 게시물 왼쪽에 있는 게시판 목록을 보면 ‘애니메이션 주제가’라고 카테고리가 설정되어 있음. 게시자가 심의

대상 게시물에서 한 곡 전체분량의 음원을 제공한 점을 고려하면 공정이용이나 인용 등 저작권 제한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음악저작물 저작권자와 실연자 등 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 전송권 등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해당 음원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그렇다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박성호 위원장 : 본 안건은 2020년 1월 20일 개최한 1분과위원회에서 전체위원회로 회부해주었는데, 심의에 참여한 위원님께서 전체위원회에 회부한 배경과 이유를 설명 바람.
- F 위원 : 보통 국내에서는 OST의 오프닝곡과 엔딩곡, 메인 테마곡은 홍보를 위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 ○○’ OST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는 음원이 판매 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아마존 재팬’ 사이트에서는 음원이 판매중임. 이러한 상황에서 애니메이션 OST의 오프닝곡과 엔딩곡, 메인 테마곡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시정권고하기 어려워 다른 심의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전체위원회에 회부함.
- 박성호 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E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은 일명 ‘음짤’이 아니라 엔딩곡 전체 분량의 음원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음원으로서의 가치는 원 저작물과 동일하다고 생각함.

- A 위원 : 안건번호 제2020-5915호~5958호 심의대상 게시물의 경우 mp3 파일이 제공된 흔적이 있어, ‘아마존 재팬’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음.
- C 위원 :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OST 음원 자체가 저작권자에게 독립 음원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임. 보통 영상에서의 엔딩 곡은 음원 판매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보다, 영상 전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음. 단순히 OST 음원을 다운로드 받아서 듣는다고 해서 독립적 음원과 동일하게 가치 판단하기는 어려움.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의 주제가는 대개 광고계약에 사용하고 있음. 저작권자측에서도 전체 영상에 대한 홍보 문제가 있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OST 음원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나서고 있지 않음. 독립 음원의 복제와는 다르게 고려해야한다고 봄.
- 성원영 전문위원 : ‘아마존 재팬’ 사이트에서 ○○○○ ○○ OST를 1곡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곡을 묶어서도 판매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심의대상 게시물 155건이 하나의 블로그에서 제공되고 있음.
- D 위원 : ‘아마존 재팬’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원과 해당 심의대상 게시물의 음원이 동일한지?
- C 위원 : 다름.
- D 위원 : 그렇다면 동일한 상품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의대상 게시물의 음원이 mp3 음원보다 음질이 조악할 것이라고 생각함.

- F 위원 : 모든 OST 음원을 게시하였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 ('○○○○ ○○' 게시판 목록을 보여주며)게시판에 총 167개의 OST 음원이 게시되어 있음. 본 안건은 보호원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채증한 것이 아니라 민원인이 게시물 155개를 하나하나 캡처하여 신고한 것임.

- F 위원 : '○○○○ ○○' 각 화의 엔딩곡만 게시한 것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 엔딩곡 또는 오프닝곡을 게시함.

- A 위원 : '아마존 재팬' 사이트에서 '○○○○ ○○'의 엔딩곡, 오프닝곡을 각각 판매하고 있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 ('아마존 재팬'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면서)현재 '아마존 재팬' 사이트에서 ○○○○ ○○○ OST 음원 곡당 판매되고 있으며, CD로도 판매되고 있음.

- A 위원 : 곡당 ₩250에 판매되고 있음. 한화로 약 3,000원정도임.

- C 위원 : OST 음원을 곡당 판매하고 있다면 독립 음원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어 보임.

- 박성호 위원장 : 전문위원 검토 의견대로 시정권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위원님께서서는 이의제기하여 주시기 바람.

- G 위원 : 이의 없음.
- F 위원 : 동의함.
- A 위원 : 이의 없음.
- D 위원 :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동의함.
- E 위원 : 가결하는데 동의함.
- B 위원 : 가결 의견임.
- C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기권함.
- 박성호 위원장 : 안전번호 제2020-5892호~5959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가결 : A 위원, B 위원, D 위원, E 위원, F 위원, G 위원 / 기권 : C 위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0-5888호는 부결하고, 제2020-5889호~5959호는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28쪽부터 39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459호는 부결함”

○ 제3호 : 2020년도 상반기 분과위원회 구성

- 성원영 전문위원 : (분과위원회 구성(안)을 보여주며)주요내용에 분과위원회 구성(안)이 있으며, 일부 분과위원회의 개최 요일과 위원 구성이 변경되었음.
- B 위원 : 2분과와 3분과의 시간이 기존 10시 30분에서 10시로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
- 정현순 사무처장 : E 위원님께서 참석 가능한 시간이 10시라고 회신 받아 구성(안)에 개최시간을 10시로 하였음.
G 위원님이 10시 30분에 개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하셔서 E 위원님이 10시 30분 대면회의에 참석 가능하다면 구성(안)의 개최시간 변경 가능함.
- F 위원 : 개최시간을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E 위원 : 10시 30분에 참석 가능함.
- 정현순 사무처장 : 2분과, 3분과는 구성(안)에 10시로 되어있는데 개최시간을 10시 30분으로 변경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 이의 없음.
- 박성호 위원장 : 만장일치로 분과위원회 구성(안)에서 2분과, 3분과 개최 시간을 10시 30분으로 변경하여 가결함.

(2020년도 상반기 분과위원회 구성은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분과위원회 개최요일과 위원구성은 구성(안)대로 하되, 2분과와 3분과 개최 시간을 10시에서 10시 30분으로 변경하여 가결함.”

5. 폐회 선언

- o 박성호 위원장이 제23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23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6. 3.

위원장 박성호

위원 김경숙

위원 박재화

위원 박정인

위원 윤종수

위원 최승수

위원 최현용